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전은경 간사 02-723-0808)

제 목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날 짜 2023. 8. 30 (총 14 쪽)

보 도 자 료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집회의 자유 억압하는 상황 보고 및 더욱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권고 청원해

1. 2023년 한국 내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 온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경찰은 6년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집회현장에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고,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권력 감시 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시민적·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이하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한국정부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 등의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8/30(수) 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긴급청원과 동시에 8/30(수)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 및 인권옹호자 보호 등과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 인권옹호자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각 정부에 권고합니다. 회원국 정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단체들은 긴급서한에서 국제인권 기준에 배치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를 위반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행사 금지 통고 중단 ▸ 평화적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물대포 등 위해성 장비 사용 금지 ▸ 추모제, 문화제 등에 대해 경찰의 해산, 물리적 진압 등 위헌, 위법적인 경찰의 집회 대응을 엄벌 및 금지 ▸ 헌법적 기본권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집회의 자유를 조례로 방해 또는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 중지와 같은 조치를 권고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정부부처,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만나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오늘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가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보 긴급 청원 절차 및 근거와 긴급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랑희 공감대 활동가가 집시법령 개악 시도 등 정부 여당의 탄압 상황을 보고하고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탄압 등 대표적인 집회 탄압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집시법 신고 대상도 아닌 문화제, 추모제를 강제해산한 사례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집회 탄압 양상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류다솔 민변 국제연대팀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다층적인 집회 탄압은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

▣ 붙임1 -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청원서(국문)

▣ 첨부1 -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청원(영문)

▣ 붙임1

대한민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위축 시도 관련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1. 배경

- 2020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 심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집회 신고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보완·제한 통고를 우선 검토해 최대한 보장하고, 금지통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야간집회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야간 개최를 이유로 금지통고나 제한통고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1]고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2023년 정부와 경찰의 집회 대응은 확연히 달라짐.

-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강조하였고, 2023년 5월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집회 강경 진압을 주문하였음. 윤희근 경찰청장 지휘 하에 집회 현장에서 진압봉 등 사용이 재개됨. 또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대한 자의적 제한, 비폭력 문화제에 대한 강제 해산, 고공 농성 중이던 노동자에 대해 진압봉을 사용한 폭력진압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음. 경찰은 집회 진압 경찰관을 특진시키고, 집회 해산을 위한 최루액 및 분사기 구입, 살수차 재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간집회 금지조항 신설하는 집시법개정, 불법시위전력이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제한하겠다고 하며, 집회 진압 경찰관 면책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함.

-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제19조와 제21조는 각각 표현 및 의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유엔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1년간 정부 스스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음. 이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함.

---

[1]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CPR%2FC%2FKOR%2F5&Lang=en

2. 한국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위축 시도 및 사례

1) 경찰

i.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

- 2022.5.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한 윤석열 정부는 현행 집시법11조의 3호 집회금지구역으로 규정된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이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2022년 1월~2023년 1월까지 대통령실 앞 집회 중 최소 39건이 금지통고됨.

-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주최측은 예정된 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거듭 확인하여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함. 그러나 경찰은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하였으며, 여전히 이 조항에 근거해 집회금지 통고를 하고 있음.

ii. 교통불편을 내세운 집시법 제**12**조 금지통고 확대 적용

- 집시법 제 12조는 교통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내세워 집회 개최 자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집시법 제12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집시법의 모든 금지통고 사유 중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조항이었음. 법원의 판결과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은 집시법 제12조를 적용한 '금지통고'를 자제하였음.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은 이 조항을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2022년에만 서울에서 집시법 제12조가 금지통고 근거로 제시된 사례는 219건이고, 집시법 제12조만 단독으로 금지통고사유가 된 것도 154건임. 이 154건 중 100건이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용산경찰서의 처분임[2].

[2] 국회 연속 토론회: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①"사례보고 대회-

-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한과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집회는 공공장소 및 기타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집회는 본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일정 수준의 방해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해가 불균형적인 부담을 가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당국은 모든 제한에 대해 상세히 그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CCPR/C/GC/37, 47문단). 정부의 금지통고 확대적용은 이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임.

iii. 불법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사실상 집회 허가제 방침 발표

- 윤석열정부 들어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단속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진행하였는데, 단속 대상 행위 중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가 포함됨.

- 위 특별단속 이후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건설노조 사무실 19차례 압수수색, 1,200여명 소환조사, 28명 구속(8월 10일 현재) 되었음.

- 경찰은 5월 16일-17일 건설노조 결의대회 집회 장소 및 행진 신고(총 24회)에 대해 불허 및 부분금지통보(사유 집시법 12조)하여 불법집회가 될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유도함.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통고는 집회를 무력화시키고, 집회의 장소적, 시간적 범위를 현격히 축소하여 이를 벗어날 시 허가범위 일탈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23년 5.24.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에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말하는 등 반인권적·반헌법적 집회의 자유 제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실제로 경찰은 2023.8.4. 10·29 이태원참사 추도 촛불문화제 신고에 대해 집시법12조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부분금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행진할 경우 심각한 교통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출퇴근 시간대인 9시~10시, 17시~20시까지 금지 통고함.

- 또한 윤석열정권 퇴진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대사관이 신고한 행진 경로에 위치해 있어 외교기관이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경로를 단축하여 부분금지통고함. 이때, 특히 과거 동일 단체가 개최한 동일한 내용의 집회가 경찰의 행정처분을 위반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일부 지역 행진을 금지함. 이는 주최 단체의 전력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허가제임.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자료집 7쪽,2023.6.15.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J3yX9EA-GLWGnGe6PAsdCzA_ZK1lYa34Uh7o5wPFYY/edit?usp=drivesdk

iv. 비폭력 집회 강제 해산**,** 폭력적 진압**,** 신고 대상 아닌 문화제나 추모제 강제철거 등

- 지난 3년간 20여 차례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문화제와 노숙농성이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경찰은 2023년 5월 25일 대법원 앞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사전 봉쇄함. 또한 이를 제지하려던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한편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함. 2023년 6월 9일과 10일 문화예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 인도에서 문화제를 하려하자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폭력적으로 이격하고 밤새 괴롭힘. 이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생김.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 함은 방화·재물손괴 등 폭동 수준의 상태를 뜻함. 폭동 수준의 폭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이 비폭력 문화제를 강제해산한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특별보고관과 초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공동 보고서에서 "집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회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집회를 해산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에도 반함.

사진1[3]

- 2023.5.31.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의 노조법에 따른 합법적 농성에서 고공1인시위를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경찰봉으로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력 진압함.

[3] 2023.5.25. 대법원 앞 비정규직 이제 그만 야간 문화제 참석자를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음.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409.html

사진2[4]

-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며 분신한 양회동 노조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으나 경찰이 무단 설치물로 규정, 별도의 계고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렸으며 결국 26분만에 강제 철거 되었음. 과정에서 4명이 연행되었고 4명이 부상을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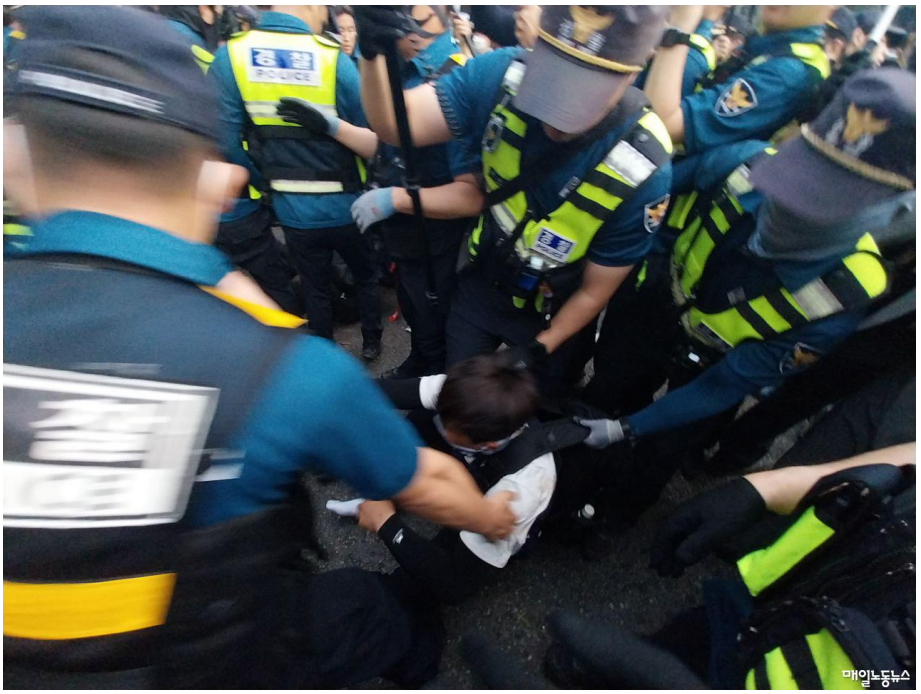

사진3[5]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문화제를 4월 29일~5월 26일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하였으나,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 및 방해로 원래 계획한 방식과 장소에서 집회 진행하지 못함. 경찰은 농성을

[4] 2023.5.31.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피흘리고 있음.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98
[5] 건설노조조합원 고 양회동씨의 시민분향소를 기습철거하는 경찰.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40

위한 천막도 불허하고, 문화제 도중 소음측정을 하면서 소음규정 위반이라고 경고하여 원활한 문화제 진행을 방해함.

v. 집회진압 기동연습재개, 캡사이신, 살수차 등 위해성 장비 재도입 시도

- 5/26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는 8개 부대(480여명)가 참여해 불법 집회 대응 목적으로 불법 행위자 검거·체포 훈련이 진행했음. 훈련은 시위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한 단계적 강제해산과 검거에 집중됐다고 함.

사진4[6]

- 경찰은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선 최루제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 서울 도심 집회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던 캡사이신 1463ℓ와 분사기 280대를 새로 2023년 3월에 새로 구입함.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 2년(2013~2014년)간 소요된 캡사이신(678ℓ)의 두 배 이상의 분량이라고 함. 실제로 경찰은 5/31 민주노총의 도심집회에 캡사이신이 든 가방을 메고 참석했음.[7]

[6] 6년만에 재개된 불법집회 해산 기동 훈련 중인 경찰.
출처 :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687
[7] Police issue 1st order to disperse downtown KCTU rally (The Korea Herald, 31, May)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531000833&ACE_SEARCH=1

사진4[8]

- 2015년 11월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도 살수차 일직선 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였으며 2021년 물대포 전량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짐. 그런데 최근 경찰이 집회강경대응을 선언하면서 물대포사용도 내부 논의중이라고 밝힘.

vi.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수사와 사범처리 압박

- 경찰은 1박 농성집회를 주최한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간부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함.
- 대법원 앞 문화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항의하는 관계자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체포함.
-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을 체포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던 노조원들을 연행, 체포함.

[8] 2023.5.31.캡사이신분사기가 든 가방을 휴대하고 민주노총 총력투쟁집회에 대비하고 있는 경찰. 출처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40

vii. 특정 단체(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차별적 대응 및 직무유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TCU)이 신고한 다수의 집회마다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혐오 발언과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친정부 집회 행위자들을 제지하지 않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노조들의 집회에 경찰대응이 집중되고 있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9]을 추진하며 집회 시위를 총 44회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집시법 8,12조 등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집회 금지 10회, (부분)금지 및 행진 시간제한 33회를 통고하여 평화적 집회를 방해함.

- 이와 같은 차별적인 경찰의 대응은 "국가는 정부 정책 및 정치적 논쟁에 대한 토론, 인권에 대한 보고, 평화 또는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함을 포함하여 평화로운 시위 또는 정치 활동에의 참여, 소수자 또는 취약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한 이들의 의견 및 반대의견, 종교 또는 신념의 표현 등을 포함하여 [ICCPR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함.

viii. 경찰의 면책 추진

- 경찰은 집회진압에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고, 면책심사를 폭넓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집회 강경대응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음

- 특히 경찰은 5월 1일 건설노조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신에 따른 건설노조의 6월 16일~17일, 1박 2일 도심 집회 이후 특진 대상을 50명에서 90명으로 늘렸음.

2) 정부 및 여당의 집회 자유 축소 법률 및 시행령 개정

i. 집시법 **11**조 **3**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 신설 법개정안 발의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의원 등이 2022년 6월 10일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함.

[9]1. Half million workers set for two-week nationwide strike against Yoon (The Korea Herald, Jul 2,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702000111&ACE_SEARCH=1

2. KCTU announces 400,000-strong general strike protesting Yoon administration (HANKYOREH, Jul 4, 2023)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98709.html

ii. 야간집회 금지 부활 시도

- 기존 집시법 상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폐지된 바 있음[10]. 그러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5.24. 당정협의를 통해 자정 이후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6월 국민의힘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개정안을 발의함.[11]

-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야간집회금지 법개정 추진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집회 개최가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시간 또는 날짜 자체에 제한을 두면 그 제한과 규약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CCPR/C/GC/37, 54문단)"고 명시한 것에도 반함.

iii. 교통상 사유로 집회금지 통고가 가능한 구역에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를 추가

- 윤석열정부는 집시법 12조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새로이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를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경찰청은 지난 2023년 2월 24일~4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23-2호)」을 입법예고 하였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집시법12조에 따른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음. 또한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비등함.

- 또한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집회는 공공장소 및 기타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집회는 본질적으로 일상 생활에 일정 수준의 방해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해가 불균형적인 부담을 가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당국은 모든 제한에 대해 상세히 그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CCPR/C/GC/37, 47문단)고 명시한 것에도 반함.

[10] 구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11]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22587, 2023.6.12. 발의)

iv. 인기투표식 여론조사로 집회규제 강화 시도

- 대통령실이 지난 5/12~7/3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제목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7/26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해 규제 강화할 것을 권고함. 다수의 대중이 모여 위력을 행사하는 집회의 내재적이고 본질적 속성인 제3자에 대한 불편을 교묘히 부각해 찬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 방식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음. 실명으로 로그인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최대 4번까지 중복투표가 가능하는 등 공정성도 의심스러운 방법인데다, 기본권을 국민의 단순한 찬반 여론으로 제한하겠다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발상임.

- 이러한 발상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A/HRC/20/27)를 통해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평화적 집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촉진할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과도 배치됨.

3) 지자체 조례를 통한 헌법상 권리 집회의 자유 침해

- 서울시, 대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광장이나 공공청사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광장사용을 ‘허가’사항으로 정한 뒤 집회 목적의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하고 있음. 물리적으로 펜스나 화단 등을 설치해 집회를 어렵게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음. 대구시의 경우 대구 시청사 내에서 1인시위를 금지하는 금지푯말을 붙이고, 화단을 구성하여 1인 시위자의 장소를 박탈하는 등 위헌적 행태를 함.

- 서울시도 광화문광장 인근과 서울시청광장주변에 펜스나 구조물을 설치하여 집회를 할 수없도록 하고 있음.

3.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권고사항

- 유엔 시민적·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의 자유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므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함.

-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일련의 집회탄압과 정부 및 여당의 집회 자유 축소 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는 정부 정책 및 정치적 논쟁에 대한 토론, 인권에 대한 보고, 평화 또는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함을 포함하여 평화로운 시위 또는 정치 활동에의 참여, 소수자 또는 취약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한 이들의 의견 및 반대의견, 종교 또는 신념의 표현 등을 포함하여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결정과(A/HRC/RES/12/16, 5(p)(i)문단),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A/HRC/20/27)를 통해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평화적 집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촉진할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데에도 명백히 위배됨.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특정 단체의 집회를 다수가 모여 진행하는 집회의 내재적 특성상 불가피한 소음 및 교통에서의 시민 불편을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연일 불법집회 엄단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에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국제인권법 기준에 배치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위반하는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할 것을 요청함.

    -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행사를 금지하지 말 것
    - 평화적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물대포 등 위해성 장비 사용 금지
    - 추모제, 문화제 등 평화적 집회에 대해 경찰의 해산, 물리적 진압 등 위헌, 위법적인 경찰의 집회 대응 엄벌 및 금지
    - 헌법적 기본권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집회의 자유를 조례로 방해 또는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 중지

- 마지막으로 유엔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정부부처,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만나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함.

2023년 8 월 30 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